

붙임(보도 참고)

'15.7.22(수) 17:00부터 보도 가능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방안

2015. 7

특 허 청

목 차

I. 검토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개선 방안	9
IV. 향후 일정	13

I. 검토 배경

-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적용된 지재권에 대해 권리자 이외의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
 - 지재권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가 물건, 용기 또는 포장에 해당 지재권을 표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시 활용
 - * 특허 표시의 경우, 특허법 관련 규정(특허법 제223조,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특허”라는 문자와 해당 특허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
 - 지재권 표시를 통해 제품에 적용된 지재권의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 등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 * 연간 12만 건 이상의 특허가 등록되고 있으나, 해당 물품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특허가 제품화가 되어 있는지를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지재권(특허) 표시 사례>



- 지재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불필요한 지재권 분쟁의 사전 예방 효과를 발생
 -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표지가 되고, 기업에게는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
 - 제품에 적용된 지재권의 제3자 공지를 통해 지재권 분쟁 예방, 거래 활성화 및 개량 발명 촉진 등의 효과도 발생

II. 현황 및 문제점

- ◆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생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
- ◆ 기업의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
- ◆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의 지재권 표시 제도 활용이 저조
- ◆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형성을 위한 국민적 인식 미흡

① 지재권 허위표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 미흡

- 온라인 쇼핑몰, 신문·잡지, 전단지 등의 매체에서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광고하는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생
 - 특히,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가 많이 발생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특허 표시된 광고 중 57%만이 제대로 표시되었고, 나머지 43%는 허위 또는 미흡한 표시로 조사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특허 표시 현황 >

- 조사 대상 :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11번가, 옥션, G마켓)
- 조사 기간 : '15.6월
- 조사 방법 : “특허상품”, “특허제품”,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키워드로 검색된 목록을 전수 조사
- 조사 결과 : 특허를 활용한 전체 28,123건의 광고 건수 중 올바르게 특허 표시한 경우는 56.9%, 허위표시인 경우는 6.0%, 미흡한 표시는 37.1%로 조사

전체 건수	올바른 표시	허위 표시	미흡한 표시	
			특허 번호 불명확	특허번호 없음
28,123건 (100%)	15,998건 (56.9%)	1,689건 (6.0%)	2,535건 (9.0%)	7,911건 (28.1%)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허위 표시 사례>

대한민국 조화판매 1위 사이트인 "심품" 심품의 입점업체인 "행잉바스켓"이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행잉바스켓>은 주로 양초상 식물용 소재로한 "갈이화분, 화장분"을 판매하는 식물화분 업체입니다(모든 화분은 식물용 갈지, 갈은, 반활로으로도 판매합니다), 주을 판매장소를 소개합니다. ①특허출원, 특허획득한(출원번호20-2013-0000931)새집을 위한 "그래스 네모화분" 	특허획득한(출원번호20-2013-0000931) ⇒ 특허출원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특허획득한 제품으로 표시
--	---

-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절된 것을 특허 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다양한 허위표시 유형이 존재

< 특허 허위 표시 유형 >

- 특허출원 중인 물품을 출원번호 표기도 없이 단순히 특허제품이라고 표기
- 특허출원번호를 등록번호인 것처럼 표기
- 거절된 것을 특허 제 000 호 또는 특허출원 제 000 호등으로 표기
- 권리가 소멸된 것을 특허 제 000 호라고 표기
- 특허 출원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등록 또는 출원한 것으로 표기

□ 지재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정책적 대응 미비

- 지재권 법령에 허위표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고**, 홍보 및 계도 조치도 미흡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허위표시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있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까지 특허 허위표시 관련 판결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중 10건이 허위 표시죄로 처벌

-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해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는 전담 민원 서비스 창구도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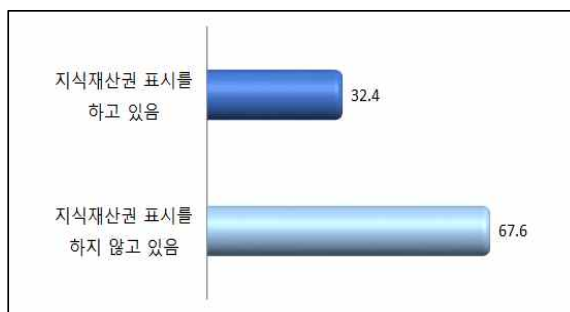
*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있으나, 별도의 민원 창구가 없어 허위표시 신고 건수가 미미한 상황(민원 건수 : '14년 6건, '15년 7건)

② 기업의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

- 기업 대상 지재권 표시 실태 조사('15.6) 결과, 지재권 표시 기업이 많지 않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재권 표시 비율이 높음
- 105개 설문대상 기업 중 32.4%가 지재권 표시를 하고 있고, 주로 특허와 상표를 많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재권 표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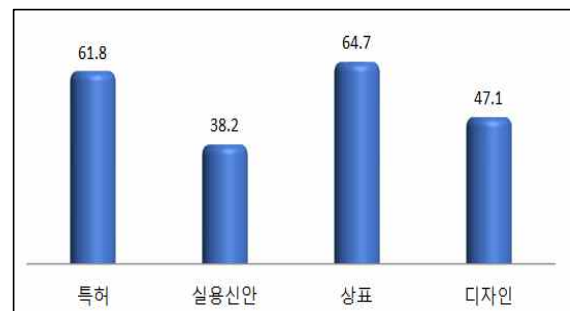
(단위: %)



* Base : 전체 기업 (n=105)

<제품에 표시한 지재권 종류(중복응답)>

(단위: %)



* Base : 지재권을 표시하는 기업 (n=34)

-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작을수록 지재권을 표시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벤처 기업의 경우는 41.7%가 지재권을 표시

* 중소·벤처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지재권 표시를 통한 제품 홍보 필요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생산 제품의 지재권 표시 여부>

(단위: 개, %)

구 분		사례 수	지재권 표시를 하고 있음	지재권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전 체		105	32.4	67.6
매출 구분	100억 미만	26	38.5	61.5
	100~500억 미만	28	35.7	64.3
	500~1,000억 미만	12	33.3	66.7
	1,000억 이상	39	25.6	74.4
기업 유형	대기업	6	16.7	83.3
	일반중소기업	58	32.8	67.2
	중견기업	29	31.0	69.0
	벤처기업/INNO-BIZ기업	12	41.7	58.3

* Base : 전체 기업 (n=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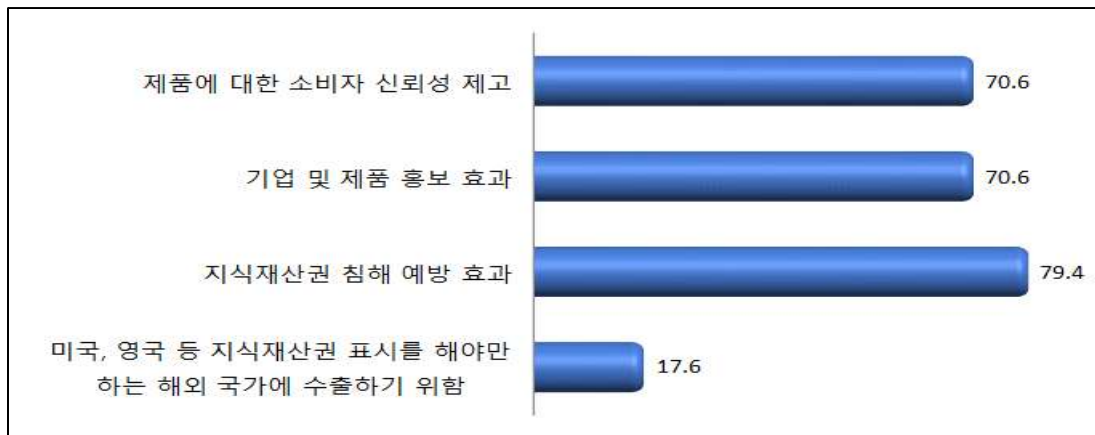
〈 참고 〉

□ 지재권 표시 기업의 지재권 표시 이유

- ‘지재권 침해 예방 효과’(79.4%), ‘소비자 신뢰성 제고’(70.6%), ‘기업 및 제품 홍보 효과’(70.6%)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표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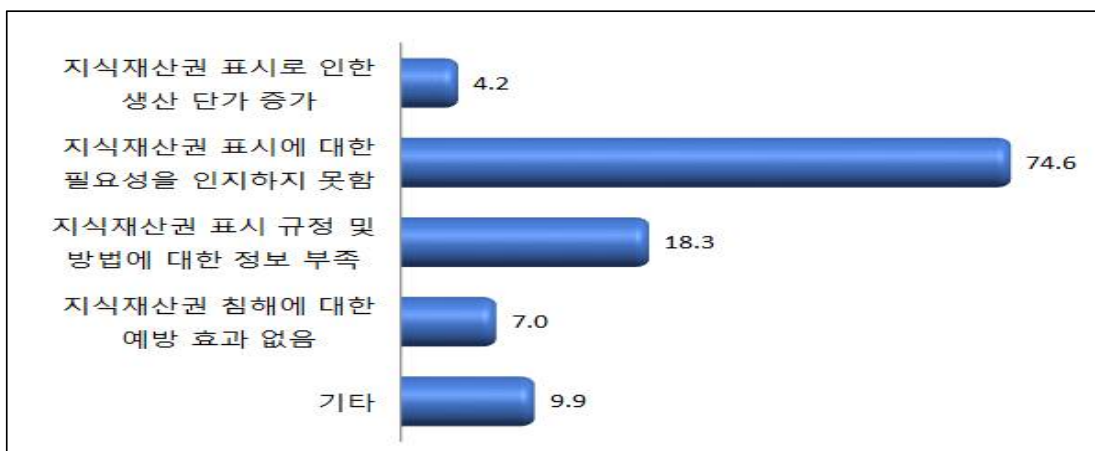
* Base : 지재권을 표시하는 기업 (n=34)

□ 지재권 미표시 기업의 지재권 미표시 이유

-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74.6%), ‘표시 규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18.3%)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

<지식재산권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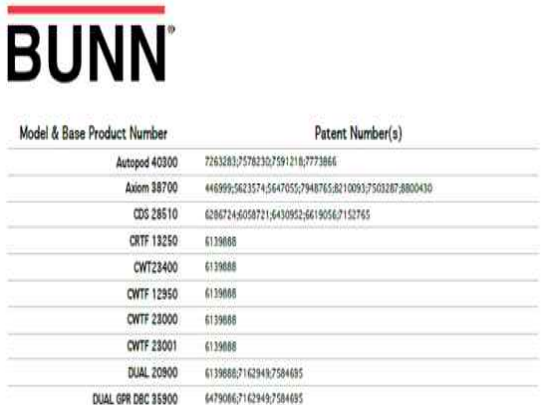


* Base : 지재권을 표시하지 않는 기업 (n=71)

③ 기업의 지재권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실정

- 주요 선진국에는 인터넷에서 지재권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재권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 인터넷을 통해 특허표시를 하는 표시 제도를 도입(미국 '11년, 영국 '14년)하여 IT 기반의 특허표시 가능
 - 인터넷 특허표시*(virtual marking)는 기존의 물리적 표시**(physical marking)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소비자 접근성도 향상
 - * 제품 또는 라벨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특허 번호 게재
 - ** 제품 또는 라벨에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 번호를 기입
 - 물리적 표시는 지재권 무효 등의 변경 사항 발생시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 번거로우나, 인터넷 표시는 용이하게 변경 가능

<미국의 특허표시 사례>

물리적 표시(physical marking)	인터넷 표시(virtual marking)																						
	 <table border="1"> <thead> <tr> <th>Model & Base Product Number</th><th>Patent Number(s)</th></tr> </thead> <tbody> <tr> <td>Autopod 40300</td><td>7263283;7578235;7591218;7773866</td></tr> <tr> <td>Axiom 38700</td><td>446999;5623574;5647055;7948765;8210093;7503287;8800430</td></tr> <tr> <td>CDG 28510</td><td>6286724;6058721;6430952;6619056;7152765</td></tr> <tr> <td>CRTF 13250</td><td>6139888</td></tr> <tr> <td>CWT23400</td><td>6139888</td></tr> <tr> <td>CWTF 12950</td><td>6139888</td></tr> <tr> <td>CWTF 23000</td><td>6139888</td></tr> <tr> <td>CWTF 23001</td><td>6139888</td></tr> <tr> <td>DUAL 20900</td><td>6139888;7162949;7584695</td></tr> <tr> <td>DUAL GPR DBC 35900</td><td>6479086;7162949;7584695</td></tr> </tbody> </table>	Model & Base Product Number	Patent Number(s)	Autopod 40300	7263283;7578235;7591218;7773866	Axiom 38700	446999;5623574;5647055;7948765;8210093;7503287;8800430	CDG 28510	6286724;6058721;6430952;6619056;7152765	CRTF 13250	6139888	CWT23400	6139888	CWTF 12950	6139888	CWTF 23000	6139888	CWTF 23001	6139888	DUAL 20900	6139888;7162949;7584695	DUAL GPR DBC 35900	6479086;7162949;7584695
Model & Base Product Number	Patent Number(s)																						
Autopod 40300	7263283;7578235;7591218;7773866																						
Axiom 38700	446999;5623574;5647055;7948765;8210093;7503287;8800430																						
CDG 28510	6286724;6058721;6430952;6619056;7152765																						
CRTF 13250	6139888																						
CWT23400	6139888																						
CWTF 12950	6139888																						
CWTF 23000	6139888																						
CWTF 23001	6139888																						
DUAL 20900	6139888;7162949;7584695																						
DUAL GPR DBC 35900	6479086;7162949;7584695																						

- 반면, 우리나라는 지재권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흡
 - 특허표시 방식과 관련하여 물리적 특허표시는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특허표시 규정은 없는 상황
 - * 인터넷 특허표시는 IT 기술과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하며, 수수료 미납 또는 무효가 되어 지재권 소멸시 신속한 삭제가 가능

< 특허 표시 관련 규정 >

◆ 특허법 제223조(특허표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
3.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 기업 설문 조사 결과('15.6),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표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

- 지재권 표시 기업중 인터넷 표시를 하는 기업은 23.5%이나, 향후 관련 제도 구축시 인터넷 표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6%

<인터넷 지재권 표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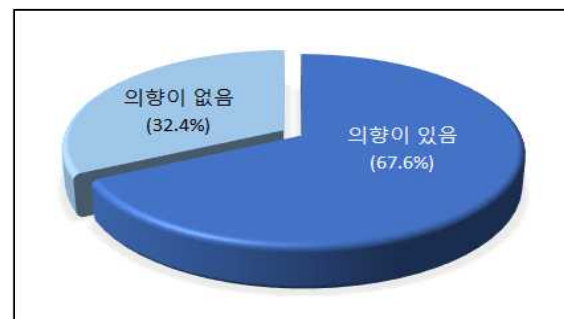
(단위: %)



* Base : 지재권을 표시하는 기업 (n=34)

<제도 구축시 인터넷 표시 의향>

(단위: %)



* Base : 지재권을 표시하는 기업 (n=34)

- 특히,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인터넷 지재권 표시 의향(75.9%)이 연구소 미보유 기업(2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

<기업연구소 보유 여부에 따른 인터넷 지재권 표시 의향>

(단위: 개, %)

구 분		사례 수	의향이 있음	의향이 없음
전 체		34	67.6	32.4
연구소 보유여부	기업연구소 보유	29	75.9	24.1
	기업연구소 미보유	5	20.0	80.0

* Base : 지재권을 표시하는 기업 (n=34)

④ 공정한 지재권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 미흡

□ 올바른 지재권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

- 지재권 표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지재권 표시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실정
- 「산업재산권 표시요령 및 허위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련('97.11)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

*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표시 요령, 문제가 되는 허위표시·광고 유형, 허위 표시·광고 유형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시정권고, 검찰 고발) 등으로 구성

□ 지재권 표시 요령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전무한 상황

- 지재권 표시 요령에 대해 기업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나, 특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재
- 특히, 온라인 쇼핑몰 운영 업체와 입점 업체의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인터넷상의 허위표시가 빈발하는 실정

□ 일부 지재권 용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미흡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오인과 혼동을 유발

- “출원”은 지재권이 등록되기 이전의 특허 신청 상태를 의미하나, 일반 국민은 지재권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
- 이로 인해, 지재권을 출원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등록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사례가 다수 발생

<관련 사례>



Ⅲ. 개선 방안

1 지재권 허위표시 방지 체계 구축

- ◇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 ◇ 지재권 허위표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고, 민간 쇼핑몰 업체와의 협업 체계를 마련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설치·운영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지식재산보호협회에 설치하여 허위 표시와 관련된 모니터링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 창구로 활용
- 허위 표시에 대한 국민 민원 접수 및 행정·사법 조치 요청, 허위 표시 확인 서비스 제공, 허위 표시 모니터링 등의 기능 수행
 - (민원 상담·접수 및 처리) 허위 표시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특허청 등에 행정·사법적 조치 요청
 - (허위표시 확인 서비스) 일반 국민은 허위 표시 여부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허위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제공



□ 지재권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 및 시정 조치 강화

- 지재권 허위 표시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고발조치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 1회, 2회 적발시 행정지도서를 송부하여 계도하고, 3회 적발시에는 형사 고발하는 단계적 조치 체계 마련

<단계별 처리 기준>

1단계(특허청)	2단계(특허청)	3단계(검찰)
(1회 적발시)	(2회 적발시)	(3회 적발시)
행정 지도서 송부	행정 지도서 재송부	형사 고발(검찰)

□ 지재권 허위 표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실시

- (모니터링)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로 연결
- (실태조사) 신문·잡지, 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지재권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매년)

□ 온라인·모바일 쇼핑몰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방지 협업 체계 구축

- 민간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 방지 협의회를 구성·운영
-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허위표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쇼핑몰에 게재된 광고의 지재권 허위표시와 미흡한 표시(지재권 번호 표시 불명확) 목록을 제공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올바른 표시 요령을 전파

2 지재권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여건 개선

- ◇ 인터넷 특허 표시의 국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인터넷 특허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터넷 표시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인터넷 특허 표시 규정 신설

-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용이하게 제품에 대한 특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표시 규정을 특허법 시행규칙에 반영
 - 물건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특허표시)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특허표시) ① 법 제2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도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그 특허번호가 게재된 인터넷 주소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그 방법특허번호가 게재된 인터넷 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 인터넷 특허표시 지원 및 확산

- 중소기업의 경우 지재권 인력과 경영 여건이 열악하므로 인터넷 특허표시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인터넷 특허 표시 모범 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터넷 특허표시를 국내 확산

- ◇ 올바른 특허표시 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
- ◇ 일반 국민들이 특허 출원과 등록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배포

- 허위표시 예방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재권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문서형태의 가이드라인 외에 동영상, 브로셔 등을 제작하여 배포

□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기업) 업종별 단체 및 전문 교육 기관 등을 통해 지재권 표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지재권 표시·광고 요령 전파
- (소비자) 허위 표시·광고 사례를 일반 소비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오인·혼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지재권 출원 표시 관련 혼동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 출원과 등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특허출원 표시를 할 때 “특허출원(심사중) + 출원번호”*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정비**

* 표시예: 특허출원(심사중) 제10-2014-0012345호

**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특허표시): 특허출원 표시는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한다(신설) (’15.7.29 시행 예정)

- 국민들이 출원과 등록의 의미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출원”이라는 용어를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IV. 향후 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1. 지재권 허위표시 방지 체계 구축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설치·운영	'15.10월 ~
▪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조치 기준 마련	'15.10월
▪ 지재권 허위표시 모니터링 실시	'15.10월 ~
▪ 지재권 허위표시 실태조사 실시	'15년 ~
▪ 지재권 허위표시 방지 협의회 운영	'15.11월 ~
2. 지재권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여건 개선	
▪ 인터넷 특허표시 규정 신설	'16년
▪ 중소기업의 인터넷 특허표시 지원 및 확산	'16년 ~
3. 지재권 표시 질서 확립 및 인식 제고	
▪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수립·배포	'15.10월
▪ 지재권 표시 홍보 실시	'16년 ~
▪ 지재권 표시 교육 실시	'16년 ~
▪ 지재권 표시 규정 정비	'15년 ~

□ 특허법

< 특허 표시 조항 >

◆ 특허법 제223조(특허표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
3.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 특허법 시행 규칙 제121조(특허표시)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 허위 표시 조항 >

◆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특허법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용신안법

< 관련 조항 >

- ◆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표시 조항 >

- ◆ 디자인보호법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 허위 표시 조항 >

- ◆ 디자인보호법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 디자인보호법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